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9.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8. 4.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 8. 24.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 9.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가. 제출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의거 제정되었던 동조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하여 동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 및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의 개정으로 해당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위임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990. 6. 11.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폐지 조례안은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동조례 제정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김유현 위원) : 제안이유는 잘들었는데 구체적 주요골자는 무엇인가?
- 답변(최승범 생활체육과장) : 유흥업소 허가신청이 있으면 생활체육과에 이첩되고 우리과에서는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4년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보건법에 따라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중복 규정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히 유흥업소가 있는 곳에 체육시설 허가가 곤란하여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년월일: 1994. 8. 4.

제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위임에 의거 제정되었던 동조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하여 동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 및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의 개정으로 해당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위임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1990. 6. 11.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폐지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4. 폐지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9.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 8. 30.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1994. 9. 6.
- 다. 상정일자: 제2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 9.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춘기)

가. 제출이유

- 현재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정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코자 하며, 임용자격기준 중 미비하였던 표기를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별정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 임용자격기준 중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미비하였던 표기 사항보완 개정(안,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및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구시군에 각각 1인 이상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현행 8급 아동복지지도원 외 7급 직원을 신설하여 아동의 건전한 출생 및 복리보장을 위한 유능한 인력의 확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김유현 위원장) : 아동복지지도원 별정7급 임용자격기준 신설은 정원 조정인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아닙니다. 현 별정8급을 7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질문(김유현 위원장) : 임용자격도 전문대학에서 학사로 격상되는 것이 맞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
----------	-----

제출일시 : 1994. 8. 30.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우리 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정7급 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코자하며, 임용자격기준중 미비하였던 표기를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임.